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26 발의연월일: 2025. 4. 22.

발 의 자: 박정하·최보윤·김상훈

엄태영 • 박상웅 • 서일준

정동만 • 이인선 • 박덕흠

김용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수화언어에 대한 인식 개선이 미흡하여 교육인력 양성이나 수어 교육 및 보급이 늦어지고 있어 수화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재 미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에서는 수화언어를 외국어로 인정하거나 초·중등학교와 대학 등에서 교과에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수화언어를 교과 과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수화언어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에 포함함으로써 한국수화언어의 교육 및 보급을 증진하고 양 질의 수어교육인력을 양성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화언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초·중등학교 한국수어 교육)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한국수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과에 한국수어 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교원의 양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1조의2(초・중등학교 한국수
	어 교육) ① 국가는 「초·중
	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에서 한국수어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같
	은 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과에 한국수어를 포함하
	<u> 여야 한다.</u>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한국
	수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
	재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교원의 양성 등에 필요한 정책
	<u>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